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. 5. 23 선고 2020가단65583(본소), 2021가단52614(반소),
2021가단53853(반소), 2021가단61755(반소), 2022가단63512(반소), 2022가단63833(반소)

판결 [공탁금 출급청구권

확인 · 사해행위취소 · 사해행위취소 · 사해행위취소 · 사해행위취소 · 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

피고(반소원고)1. C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김예리, 채지연

2. 주식회사 D

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인

3. E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 담당변호사 김창환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윤희, 이영희, 오현근

4. F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G

5. H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한별 담당변호사 강성래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영범

변론 종결2022. 12. 6.[피고(반소원고) 1, 3, 4에 대하여]

2023. 3. 14.[피고(반소원고) 2, 5에 대하여]

판결 선고2023. 5. 23.

주 문

1. 피고(반소원고) C 주식회사, 주식회사 D, H 주식회사의 각 반소를 각하한다.
2. 원고(반소피고)와 피고(반소원고) C 주식회사, 주식회사 D, H 주식회사 사이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(반소피고)에게 있음을 확인한다.
3. 원고(반소피고)와 피고(반소원고) E 주식회사, F 주식회사 사이에서,
가. 원고(반소피고)와 주식회사 I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0. 5. 5.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,
나.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주식회사 I에게 있음을 확인한다.
4. 원고(반소피고)의 피고(반소원고) E 주식회사, F 주식회사에 대한 각 본소청구를 기각한다.
5. 소송비용은 본소, 반소를 합하여 그 중 원고(반소피고)와 피고(반소원고) C 주식회사, 주식회사 D, H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(반소원고)들이 부담하고, 원고(반소피고)와 피고(반소원고) E 주식회사, F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(반소피고)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본소: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 한다)에게 있음을 확인한다.

반소: 원고와 주식회사 I(이하 '채무자 회사'라 한다)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0. 5. 5.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. 원고는 채무자 회사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, 대한민국(소관: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공탁공무원)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채무자 회사는 지붕판금공사업, 건축물조립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, 원고 및 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 한다)들로부터 자재 등을 납품받아 오던 중, 2020. 5. 5. 원고에게 J 주식회사(이하 '소외 회사'라 한다)에 대한 대금 채권 중 5,000만 원을 양도하고, 2020. 5. 8. 소외 회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.

나. 한편 아래와 같이 원고 외에 피고 C 주식회사(이하 '주식회사'를 처음 표기한 다음부터는 그 기재를 생략한다) 등도 채무자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며 소외 회사에게 그 통지를 하였고, 피고 주식회사 D 등은 채무자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중 각 아래 청구금액 상당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다.

1) 채권 양수

2020. 5. 7.	K 주식회사	82,384,714
2020. 5. 7.	피고 C	100,000,000
2020. 5. 8.	원고	50,000,000
합계		232,384,714

2) 채권 가압류

2020. 5. 14.	피고 D	서울중앙지방법원2020카단80822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	260,000,000
2020. 5. 28.	피고 E 주식회사	2020카합5058서울중앙지방법원	88,000,000
2020. 5. 29.	피고 F 주식회사	2020카단257서울중앙지방법원	70,000,000
2020. 6. 26.	피고 H 주식회사	2020카단811248	200,000,000

다. 소외 회사는 위 각 채권양도의 효력 유무를 알 수 없고, 위와 같이 가압류결정 등을 송달받았다는 사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91조, 제248조 제1항에 따라 2020. 7. 21. 채무자 회사, K, 피고 C,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소외 회사가 채무자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합계 257,776,705원(이하 '이 사건 채권'이라 한다)을 혼합공탁하였다(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년 금제937호, 이하 '이 사건 공탁'이라 한다).

[증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피고 C, D, H에 대한 각 본소청구 및 위 피고들의 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,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,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(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)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(대법원 1994. 4. 26.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).

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K 및 피고 C의 각 채권양수가 유효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고의 채권양수에 관한 통지가 소외 회사에게 도달하였을 당시 이 사건 채권이 5,000만 원 이상 잔존하고 있었고, 위 통지가 피고 D 등의 가압류결정의 송달보다 먼저 이루어졌으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중 5,000만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.

나. 피고 C, D, H는, 원고와 채무자 회사 사이의 위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, 갑 제4호증, 을마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탁원인 사실로 "채무자 회사가 2020. 4.경 부도가 나고 은행거래가 정지된 직후에 각 채권양도통지를 받았는바, 채무자 회사의 원고 등에 대한 각 채권양도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그 효력 유무를 알 수 없다"고 명시한 사실, 피고 C, D, H는 위와 같이 기재된 이 사건 공탁통지서를 2020. 7. 29. 이전에 각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, 위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공탁통지서를 송달받은 무렵에는 채무자 회사가 부도가 난 직후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중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. 그런데 위 피고들의 각 반소는 위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제기된 사실(피고 C: 2022. 9. 16., 피고 D: 2022. 9. 7., 피고 H: 2021. 7. 29.)은 기록상 명백하므로, 위 피고들의 각 반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.

3. 원고의 피고 E, F에 대한 각 본소청구 및 위 피고들의 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피보전채권

을마 제4, 5, 11호증, 을바 제4,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원고의 이 사건 채권 양수 당시 피고 E, F은 각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 회사에게 자재 등을 납품하여 그 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,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사해행위의 성립

1)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,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좋은 이행을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(대법원 2014. 1. 16. 선고 2012다110521 판결 참조).

2) 이 사건의 경우, 앞서 든 증거와 을마 제9호증, 을바 제7, 8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, 채무자 회사는 2020. 5. 5.경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, 따라서 채무자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일부를 양도하여 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수익자인 원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① 채무자 회사는 2020년 초경부터 지속적인 영업 손실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재무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.

② 채무자 회사가 발행하여 피고 E, F을 비롯한 납품업체들에게 교부한 전자어음 중 만기일이 2020. 4. 30.인 전자어음이 2020. 5. 4.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(당좌부도) 되었고, 채무자 회사는 2020. 5. 7. 위 당좌부도로 인하여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.

③ 채무자 회사는 당시 적극재산으로 기계설비 및 제조물 등 유체동산과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는데, 기계설비 등은 상당 부분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물품대금 채권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주요 자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.

④ 이에 채무자 회사는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원고 등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양도하였는데, 양도 대상 채권액이 각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다.

⑤ 결국 채무자 회사는 위 당좌부도 이후 자금난을 해소하지 못한 채 사실상 폐업하였고, 이후 채무자 회사의 2020. 5. 6.부터 2020. 10. 26.까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연체액이 약 120억 원에

이르렀다.

3) 원고는, 채무자 회사가 원고에 대한 기존 대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채권 일부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,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인바(대법원 2013. 5. 9. 선고 2012다40998 판결 참조),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채권양도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.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다. 소결

그러므로 피고 E, F은 원고를 상대로 각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채권양도를 취소하고,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.

한편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본소청구를 다투면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반소를 적법하게 제기한 경우, 그 사해행위의 취소 여부는 반소의 청구원인임과 동시에 본소청구에 대한 방어방법이자, 본소청구 인용 여부의 선결문제가 될 수 있다. 그 경우 법원이 반소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,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, 비록 그 반소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, 원고의 소유권 등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. 그때에는 반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, 반소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이유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(대법원 2019. 3. 14. 선고 2018다277785, 277792 판결 참조).

따라서 원고와 피고 E, F 사이에서 위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이상, 위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공탁금 중 위 5,000만 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가 아닌 채무자 회사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피고 C, D, H의 각 반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, 원고의 피고 C, D, H에 대한 각 본소청구와 피고 E, F의 각 반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, 원고의 피고 E, F에 대한 각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박현경

별지